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신국가전략을 위한 다학제적 국제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

제정:	2021년	1월	20일
공포:	2021년	1월	20일
개정:	2021년	2월	10일
개정:	2021년	3월	8일
개정:	2021년	3월	22일
개정:	2021년	4월	18일
개정:	2021년	6월	14일
개정:	2021년	9월	6일
개정:	2022년	3월	7일
개정:	2022년	11월	7일
개정:	2023년	2월	7일
개정:	2023년	3월	30일
개정:	2023년	9월	4일
개정:	2024년	3월	4일
개정:	2024년	9월	2일

**제1장 조직 및 구성**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신국가전략을 위한 다학제적 국제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이하 ‘교육연구단’)의 자체 규정으로, 교육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 ① 교육연구단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BK21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 및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계약 교수, 박사후연구원), 행정전담인력 등으로 구성된다.
- ② 교육연구단에는 교육연구단장, 주임, 부주임, 참여교수회의,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 ③ 결제는 행정전담인력-부주임-주임-단장으로 한다.

**제3조 (교육연구단장)**

- ①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의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교육연구단의 운영위원회의 장을 맡는다.
- ② 교육연구단장의 직무를 대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여교수 중에서 위임받은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주임)**

- ① 주임은 교육연구단장이 임명하는 1인이 맡는다.

② 주임은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며 교육연구단의 상시 업무(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를 기획, 실행,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 제5조 (부주임)

① 부주임은 교육연구단장이 임명하는 2인이 맡는다.

② 부주임은 주임을 도와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며 교육연구단의 상시 업무(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를 기획, 실행,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 제6조 (참여교수의 구성 및 참여교수회의)

①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는 4단계 BK21 사업 훈령에 따른다.

② 참여교수 전원으로 구성되는 참여교수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간 사업 계획안,
2. 예산 결산안,
3. 지원대학원생 선발안,
4. 신진연구인력 및 행정전담인력 임용안,
5. 사업단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안,
6. 단장, 주임, 부주임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외의 BK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와 결정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 제7조 (운영위원회)

① 교육연구단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이 맡고, 이하 구성원은 주임, 부주임, 그리고 단장이 임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소집 시, 신진연구인력, 행정전담인력이 배석하며 사안에 따라 행정실 서무주임이 배석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교육연구단의 연간 사업계획안 수립
2. 예산집행 내역 집계 등 교육연구단의 재정운영에 관련된 사항
3. 신진연구인력 및 행정전담인력 임용안 작성(인사위원회 기능)
4. 참여대학원생 및 지원대학원생 선정에 관련된 사항
5. 교육연구단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연구성과 집계, 중간보고서 및 연차보고서 작성, 외부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수행
7. 교육연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

⑤ 참여교수회의에서 위임한 건에 대해 심의 및 결정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 (실무위원회)

① 교육연구단의 상시 업무(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를 기획, 실행, 점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신진연구인력, 행정전담인력으로 구성한다.

#### 제9조 (참여대학원생)

① 석사과정 4학기 이내, 박사과정 수료기간 포함 8학기 이내의 재학생 중에서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전일제 학생은 참여대학원생이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BK사업의 연구지원금(장학금, 국제화경비, 기타 연구지원금)을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받을 수 있다. 30일 이상의 해외장기연수 중에도, 해당 장기 연수가 참여대학원생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교육연구단장의 판단이 있을 시 장학금을 제외한 연구지원금을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받을 수 있다.
2. 교육연구단이 진행하는 연구용역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
3.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로부터 사업목적에 맞는 지도를 받을 수 있다.
4. 기타 연구·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참여대학원생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주당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의무
2. 매학기 참여대학원생 지원서를 제출할 의무
3. 교육연구단 규정과 참여교수의 지도에 성실히 따를 의무
4. 교육연구단 주최 행사에 참석할 의무

#### 제10조 (지원대학원생)

① 지원대학원생은 매 학기 지원서 및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참여대학원생 중에서 참여교수회의에서 선별하며, 이 때 다음의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를 우선 고려한다.

1. 직전학기 6학점 이상(대학원 논문연구 제외)을 이수하고 평점이 3.5이상인 자. 단, 박사수료생은 제외.
2.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자
3. 직전학기 및 전전학기에 참여교수의 연구에 성실히 참여했다고 인정되는 자
4. 석사과정 신입생의 경우, 대학원 입학성적, 연구계획서, 학부 성적, 외국어 능력 등을 고려한다.
5. 박사과정 신입생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인정 논문출판실적(SCI급, KCI등재지·후보지)을 보유한 경우(논문게재예정증명서 인정)거나 박사과정 입학 후 1년 이내에 논문을 게재한다는 조건으로 첫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한다.
6. 지원대학원생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장학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해 교내외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BK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지원대학원생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석사는 매월 100만원 이상, 박사는 매월 160만원 이상, 박사수료생은 매월 130만원 이상의 연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2. BK사업의 연구지원금(국제화경비, 기타 연구지원금)을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받을 수 있다.
3. 교육연구단이 진행하는 연구용역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
4.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로부터 사업목적에 맞는 지도를 받을 수 있다.
5. 기타 연구·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지원대학원생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주당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의무
2. 교육연구단 규정과 참여교수의 지도에 성실히 따르고, 매 학기말 연구의 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
3. 교육연구단의 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과 행사에 참여하고 운영을 보조할 의무

4. 석사과정생은 졸업 전까지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거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급 이상의 저널에 논문을 투고하며, 박사과정생(수료생 포함)은 장학금 수혜 시점부터 4학기 내에 KCI등재(후보)지급 이상의 저널에 논문게재(출판)를 완료할 의무 (단, 2023년 1학기 기준 박사과정생[수료생 포함]의 경우, 본 규정은 2024년 1학기부터 적용)
  5. 취업, 휴학 등 연구장학금 지원 중단 사유 발생시 즉각 보고할 의무
- ④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실적에 의거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 (계약교수)

- ① 계약교수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부 및 서울대의 BK21 사업 관련 규정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추천하고 참여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 최대 2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 단, 최대 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계약교수는 교육연구단 관련 학술활동 조직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나 논문지도
  2.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나 국제저명학술지, 혹은 그에 준하는 연구성과 (단행본 등)을 연 1편 이상 게재
- ③ 계약교수는 소속 사업에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부 및 서울대의 BK21 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강의를 하거나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제12조 (박사후연구원)

- ① 박사후연구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부 및 서울대의 BK21 사업 관련 규정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추천하고 참여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 최대 2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 단, 최대 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박사후연구원은 교육연구단 관련 학술활동 조직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나 논문지도
  2.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나 국제저명학술지, 혹은 그에 준하는 연구성과 (단행본 등)을 연 1편 이상 게재
- ③ 박사후연구원은 소속 사업에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부 및 서울대의 BK21 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강의를 하거나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제13조 (사무국)

- ① 교육연구단은 제반 행정실무를 보좌하는 사무국을 둔다.
- ② 행정전담인력의 임용은 운영위원회에 심의·추천하고 참여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③ 행정전담인력의 근무수칙은 서울대학교 행정직원의 수칙에 따른다.

## 제2장 운영 및 지원

### 제1조 (재정운영)

- ① 재정운영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서울대의 4단계 BK사업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운영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 규정 내에서 교육연구단의 예산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 ③ 단장은 매 회계연도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참여교수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 (학술활동 지원)

- ①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및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게재에 필요한 지원금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논문투고자와 학술대회 발표자에 한한다.
- ②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및 국제저명학술지 논문게재에 필요한 비용(논문 게재료, 영문교정비, 심사비 등)은 소정의 심사를 통해 지원한다.
- ③ 국내학자 초청강연의 경우 사례금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 (국제화경비)

- ① 교육연구단의 국제화 경비는 한국연구재단의 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단기해외연수, 장기해외연수, 해외학자 초빙, 국제학술대회 등의 항목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
- ② 제출된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하며,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거쳐 지원을 결정한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 1. 국외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의 프로시딩이나 프로그램 등에 이름과 소속이 명시된 자
  - 2.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④ 참여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지원
  - 1. 국제학술대회는 한국연구재단 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 기준을 준수하는 행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 2. 학술대회 지원은 발표자 당사자에 한한다.
  - 3. 학술대회 지원 항목은 항공료, 여비, 학회참가비를 포함한다.
- ⑤ 참여대학원생 장·단기 해외현지조사 지원
  - 1. 단기해외연수는 14일 이내의 연수에 해당되며, 4주 이상~8주 미만의 연수는 장기해외연수에 해당된다.
  - 2. 해외현지조사 지원은 현지 방문기관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당사자에 한한다.
  - 3. 해외현지조사 지원 항목은 항공료, 여비 등 연수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지원금은 귀국 후 출입국사실증명서 상의 연수 기간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환수조치될 수 있다.
- ⑥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해외학자가 사업기간 중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거나 전임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 시점 이후에는 해외학자 초빙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며 해외학자 초빙 관련 지원 경비를 집행할 수 없다.

제3장 징계 및 성과평가

제1조 (참여대학원생 징계)

- ① 참여대학원생이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참여교수단의 결정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
  - 1. 교육연구단에 제출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2. 교육연구단 일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 3. 교육연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② 징계 수위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지원대학원생 자격 박탈: 징계 결정 이후 지급되는 연구장학금 지원 취소

2. 연구장학금 환수: 당해 학기 관련 기지급된 연구장학금 환수

③ 징계가 결정된 대상자는 1회에 걸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 요청이 있을 경우 2주일 내에 재심한다.

## 제2조 (성과평가)

① 1년 동안 BK교육연구단 구성원의 교육 및 연구실적, 교육연구단에 대한 기여도 등을 성과급 집행기준에 의거, 점수로 산출하여 정해진 예산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급 지급은 실무위원회에서 안을 마련하고 참여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② 교육연구단 성과평가 시 <표 1>에 따라, 참여교수의 교육활동, 참여대학원생과의 연구실적, 교육연구단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이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연구단 성과평가 시 <표 2>에 따라,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실적 및 교육연구단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교육연구단 성과평가 시 <표 3>에 따라, 행정전담인력의 교육연구단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교육연구단 성과평가 시 다음과 같은 경우 참여대학원생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1. KCI급 저널 혹은 SSCI급 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2. BK사업 관련 워킹 페이퍼, 행사 참여 결과물 등을 제출한 경우

3. 행정상의 기여가 있을 경우

4. 기타 교육연구단장이 승인한 경우

⑥ 교육연구단 외부의 저명학자 등이 참여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으며, 외부 컨설팅 계획의 수립 등은 실무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본 규정은 BK21사업이 착수된 날로부터 소급적용한다.

<표 1> 참여교수 성과급 평가 기준표

대항목	소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및 점수		
교육	국제활동 학생 인솔	국제활동 학생 인솔	해외장기연수	5점/회	
			국제학술회의/단기연수	2점/회	
	강의/세미나	참여 학생 대상 강의 학생 세미나 참석	강의	5점/회	
			세미나 참석	2점/회	
연구	참여대학원생과의 논문게재 및 학회발표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수 (공동)	국제SCI논문	20점/편	
			국제일반논문	15점/편	
			국내등재(후보)지	10점/편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수 (학위논문 지도학생 단독)	국제SCI/국내등재(후보)지	3점/편	
			국내외 학회발표 건수	국제학회발표	2점/건
				국내학회발표	1점/건
	학술행사 조직	국내 학술행사 조직	심포지엄/콜로키움	10점/회	
			세미나	5점/회	
		국제 학술행사 조직	심포지엄/콜로키움	15점/회	
			세미나	10점/회	
교육 연구단 운영	회의 참석	참여교수 전체 회의 운영위원회	3점/회		

<표 2> 신진연구인력 성과급 평가 기준표

대항목	소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및 점수	
연구 (50%)	논문	국제SCI논문	단독, 주저자	15점/편
			공동(저자수=n)	15/n명/편
		국제일반논문	단독, 주저자	10점/편
			공동(저자수=n)	10/n명/편
		국내등재(후보)지논문	단독, 주저자	5점/편
			공동(저자수=n)	5/n명/편
	저서	외국어	단독	10점/편
			공동(저자수=n)	10/n/편
		한국어	단독	5점/편
			공동(저자수=n)	5점/n/편
교육 연구단 운영 (50%)	교육연구단 행사/활동의 조직 및 참여	국내 학술행사/활동	조직 및 참여	최대 25점
		국제 학술행사/활동	조직 및 참여	최대 25점

<표 3> 행정전담인력 성과급 평가서

평가 요소	평가 항목	점수				
		10	8	6	4	2
업무역량 (10점)	-해당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역량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까? -해당 업무에 맞는 지식, 판단력, 노하우를 지니고 있습니까?					
업무 추진력(10점)	-업무목표에 상응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까? -맡은 업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합니까?					
업무응용력 (10점)	-새로운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행합니까? -각종 평가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합니까?					
성실성 (10점)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처리합니까? -업무에 대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있습니까?					
협조성 (10점)	-자신의 일 뿐만 아니라 동료나 조직 전체의 업무달성을 위하여 협력합니까?					
<b>계(50점)</b>						
기타 의견 기술(장점 및 보완사항 등)						

평가자 성명 (인)

-----

- 점수 부여기준 -

점 수	수 준
10점	모든 기대수준을 상회하여 매우 우수함
8점	기대수준을 대부분 충족시키며 일부에서는 기대수준을 상회함
6점	기대수준을 충족함
4점	기대수준에 다소 부족함
2점	기대수준에 매우 부족함